

의안번호	제 147 호
의 결	2000. . .
년 월 일	(제 회)

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발 의 자	가대현의원외 5 인
발의년월일	2000. 4 . 24 .

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의안 번호	147
----------	-----

발 의 자 가대현의원의외 5인

발의년월일 2000. 4 . 24 .

1. 제정이유

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「정례회제도」가 도입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,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(안 제1조)
- 나. 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함.(안 제2조)
- 다.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함.(안 제3조)
- 라.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매년 6월20일 집회하되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,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 집회함.(안 제4조)
- 마.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하고,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함.(안 제5조)
- 바. 기타 정례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 함.(안 제6조)

3.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

서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(이하“의회”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2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
2.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1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